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이사장 승인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1. 9. 2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08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공단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적용하며 임·직원 및 모든 작업관계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란 작업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이란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사고”란 불안정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 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8. “안전관리”란 사업장내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 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를 말한다.
9.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해”란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1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2.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3.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4.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5.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단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관리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 및 의무) 공단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 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법 제14조에 의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계 참모(스텝)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를 지도 조언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종사자) : 공단의 전 직원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근로감독관 등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의 조직과 직무

제1절 통 칙

제7조(조직의 구분) ①공단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계선)조직과 스텝(참모) 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②라인(계선) 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③스텝(참모) 조직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다.(별표 2)

④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기구)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의 조직표는(별표 1)과 같다.

제9조(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 ①제8조 라인(계선)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공단의 조직 계통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 한다.

②스텝(참모)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이 정하는 유자격자를 선임·임명하여야 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안전·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이사회 승인) ①공단은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③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이 사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2절 라인(계선) 조직과 사무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공단 문화관광본부장은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법 제15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관리감독자) ①시설 사업부서장 및 각 팀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관리 감독자로서 소속작업장 및 근로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등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수행 상 문제 발생 시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제13조(안전담당자) 공단은 부서(팀)별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 하도록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3절 스텝(참모) 조직과 직무

제14조(안전관리자) ①공단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단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보건의) 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단은 필요시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보건관리자) ①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 하도록 하기위해 법 제18조2항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자율안전 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해당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제17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8조(위원회 구성) 공단은 법 제24조에 의거 노사 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이사장(위임받은 부 기관장)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며,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7명 이하로 동수로 구성하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과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은 사용자 대표위원에 포함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 각 간사를 둔다.

4.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결정이 없을 때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9조(개최시기)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 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수행 할 직무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시설·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 규정,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
8.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

제21조(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제26조)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29조)
6.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사항(법 제15조)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제22조(회의소집)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불참 방지) ①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4조(의안토의 등) ①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 · 의결 · 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성 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25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사항을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 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①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절 안전보건 교육

제28조(교육의 실시) ①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공단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 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 교육으로 구분되며,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한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직무교육은 법에 따라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절 통 칙

제29조(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①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12월중에 익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전 부서에 통보·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진단) ①법 제47조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부터 안전보건 진단명령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 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작업중지) ①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의거하여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발생 위험이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작업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 한다.

③모든 작업자는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절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제34조(방호조치) 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사용 할 수 없으며, 대상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 장치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3절 기계·기구 등의 검사

제35조(안전인증) 기계·기구를 구입 시에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인증기관에서 합격한 것을 사용 하도록 해야 한다.

제36조(안전검사)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크레인, 컨베이어, 국소배기장치, 공기 압축기, 승강기, 보일러 등에 대해서는 법 제93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검사결과조치) 자체검사결과 이상이 발견 될 때에는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운전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표찰을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점검 및 순찰

제38조(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등 모든 사업장의 책임자는 당해 작업분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시행 할 책임이 있다.

제39조(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확인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 전반에 대한 기계 설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당해 작업에 관하여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일일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기계·기구를 도입하여 새로운 작업방법을 실시 할 때
2. 위험 기계·기구를 수리 후 가동 하고자 할 때

제40조(점검결과조치) ①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거쳐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팀)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팀)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를 한 후 안전·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급박한 재해 발생이 예상 될 때에는 작업 중지 등 인원의 대피, 작업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5절 안전기준 등

제41조(안전기준)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기준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취급안전기준, 운반 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시행 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안전 작업지침) ①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담당자 책임 하에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 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③작업자는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해 작업을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2회 이상 발생 할 때
2.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 할 때
3. 기계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 할 때

제43조(안전수칙) ①공단은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사용한다.

②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6절 위험물질의 취급 등

- 제44조(위험물질의 보관 등)** ①안전관리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자를 위험물 취급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 하도록 한다.
- ②제1항의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 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 및 가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4장 보건관리

제1절 건강진단

- 제45조(건강진단의 구분)** ①공단은 법 제129조에 의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대상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 ②제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는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 한다.
- 제46조(질병자 근로금지·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제2절 작업환경 측정

- 제47조(작업환경 측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125조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제3절 보호구등

제48조(보호구 착용작업등) ①공단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작업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

③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항상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9조(작업복) 공단은 근로자에게 작업복(근무복)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업장별 근로자는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0조(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목격자와 관계자는 신속히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안전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②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긴급조치) ①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제52조(비상연락망) 재해 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5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재해발생 사실 통보 후 사고현장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안전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즉시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동종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재해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는 발생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아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재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⑤안전관리자(직업병 관계는 보건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4조(재해분석) ①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여 재해 다발 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여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동종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5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공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한다.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한다.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위험성의 결정,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사업주는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한 것으로 본다.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2. 안전·보건 진단

3. 공정안전보고서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제도

제5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

제7장 상 별

제57조(포상)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 포상 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 하도록 한다.

제58조(징계) ①법이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②징계 대상에 다음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자

제8장 보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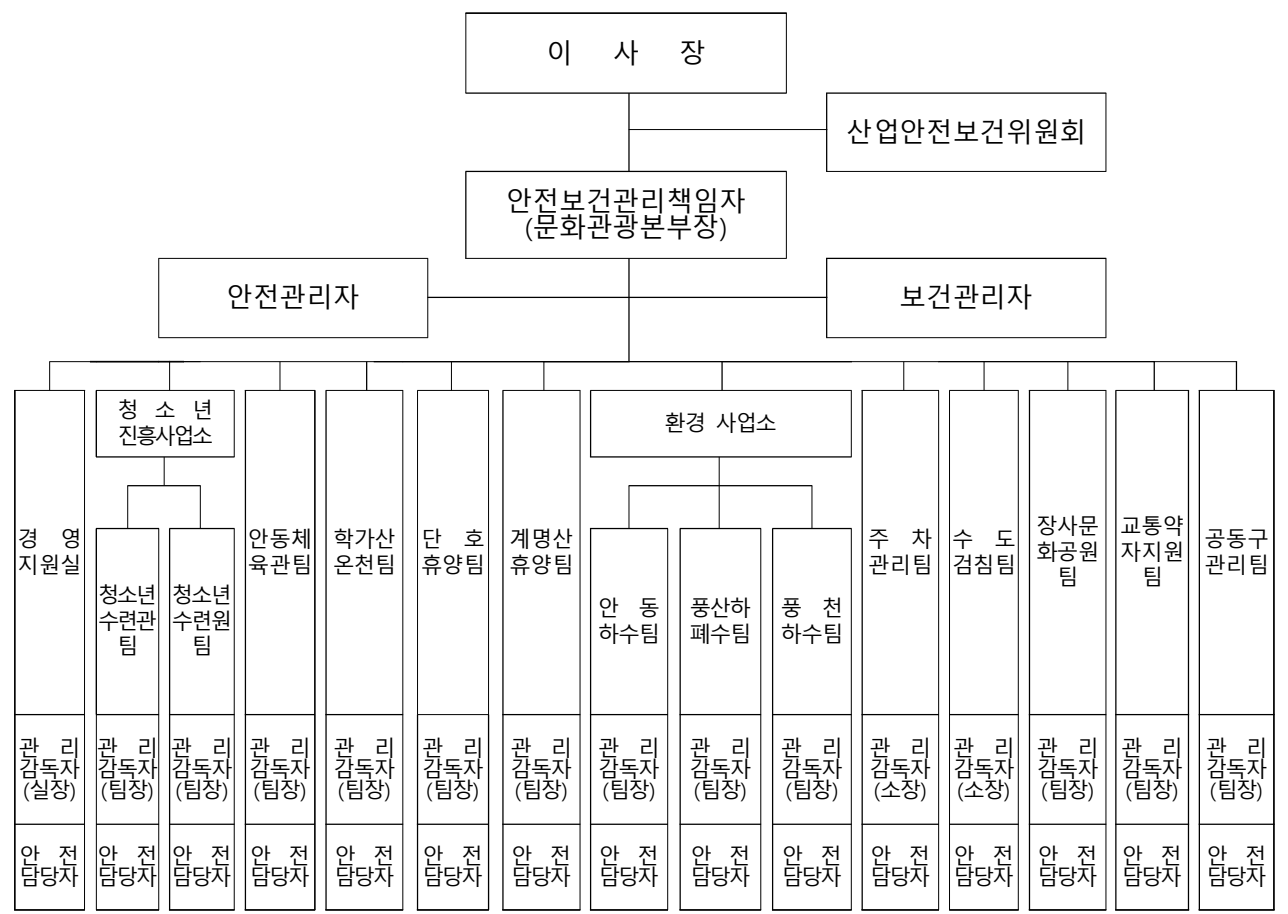
제5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1.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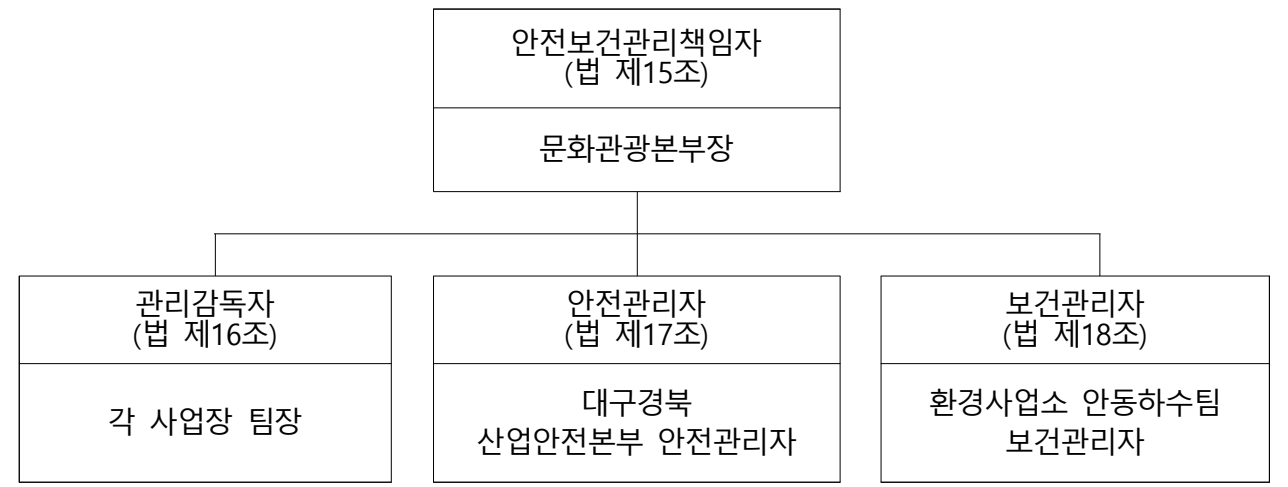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별표 2]

산업안전 보건조직 체계(스텝)



◇ 제정이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에 의거
- 2021년 제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2021. 8. 24.)의결 사항

◇ 주요골자 ◇

□ 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조문 제정